

문서번호	의회사무국-1711
결재일자	2015.3.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의사담당	의회사무국장	구의회회의장		
이성관	박민택	정은수	03/04 임태근		
협 조	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정담당			임선악 김용우 정진만 김동성 안귀성	

2015년도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

2015. 2.

구의회사무국

2015년도 성북구의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

1 목적 및 근거

- 목 적 :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
- 근 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의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2 운영개요

- 운영기간 : 2015. 4. 1 ~ 10월말
- 신청기간 : 2015. 3. 18 ~ 3. 20(3일간)
- 신청대상 : 성북구의의회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단체

※ 단체 구성원 조건 : 5인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대표자 1명, 간사 1명을 포함

※ 각 의원은 연간 2개를 초과하여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음

제출서류

- 등록신청서 1부 - 별지 1호서식
- 연구활동계획서 1부 - 별지 3호서식
- 운영단체수 : 3개단체 이내 운영을 원칙으로 함 - 예산 형편상
- 연구내용 :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
- 연구비용 :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등을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
-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: 연구결과 종료후 1개월 이내(성북구의의회 홈페이지에 게시)

3

세부 운영계획

연구단체 신청

- 신청기간 : 2015. 3. 18 ~ 3. 20.(3일간)
- 신청대상 : 성북구의회 의원 5명이상으로 구성된 연구단체
 - ※ 단체 구성원 조건 : 5인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대표자 1명, 간사 1명을 포함
 - ※ 각 의원은 연간 2개를 초과하여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음
- 제출서류 : 등록신청서(별지 1호), 연구활동계획서(별지 3호)

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

- 심의일시 : 2015. 3. 23 ~ 3. 31일 임시회 기간중(추후 결정)
 - ※ 신청서 접수후 15일 이내
- 심의장소 :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
- 심의주체 :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
- 심의대상 : 접수된 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
- 심의내용
 -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(배정된 예산을 고려)
 - 연구주체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 -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- 심의결과 통보 : 별지 4호서식에 의거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

연구활동 및 결과보고서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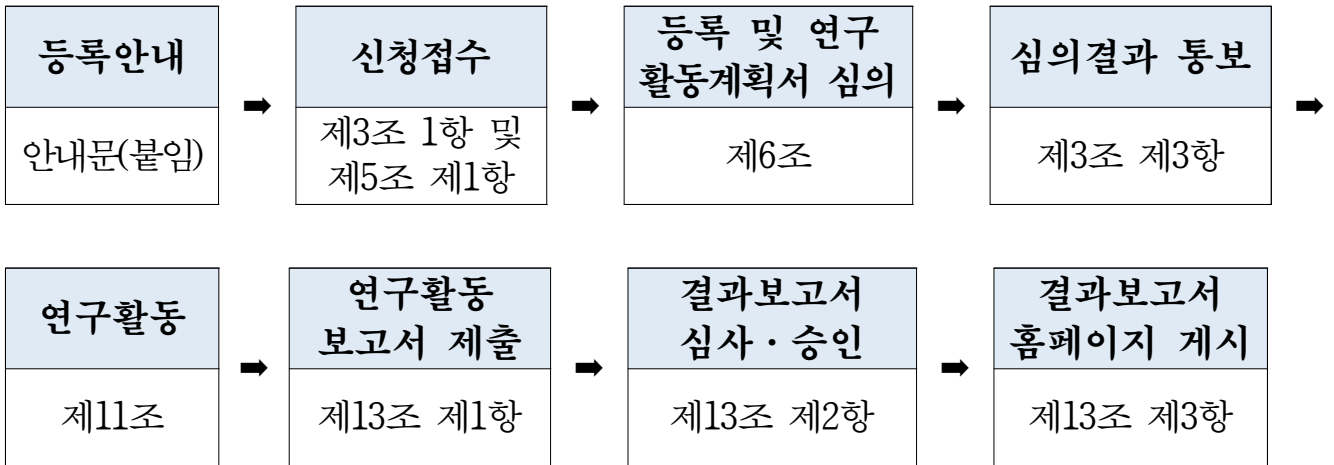
- 활동기간 : 2015. 4. 1 ~ 10월말 이내
- 활동주체 : 연구활동 단체로 등록된 연구단체
- 활동내용 :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승인된 활동계획서에 의거
- 결과보고서 제출(별지 6호서식)
 - 제출기한 :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
 -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함께 제출

○ 결과보고서 심의

- 심의일정 : 수시(각 개별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 접수후)
- 심의주체 :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
- 심의대상 :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
- 심의내용 :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에 의한 연구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 적정성

○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게시 : 위원회 심의후 승인된 결과보고서는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

□ 흐름도



주의사항

- ☞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는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
- ☞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
- ☞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

4

소요예산

- 근거 : 조례 제9조 -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% 이내(각 단체별 300만원 이하)
 - 산출내역 : 105,600,000원 × 10% = 10,560,000원 이내
- ∴ 10,560,000원 ÷ 3,000,000원 ≒ 3개단체 지원가능(예정)

5

행정사항

-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취지와 등록절차 등을 작성한 안내문(붙임) 배포 및 전송
- 활동계획서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 신청·접수 즉시 전문위원 검토의뢰
- 운영위원회 심사·승인후 각 연구단체별로 전문위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
- 연구종료후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인된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시

붙임 : 1. 안내문 1부

2.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1부

3. 별표1 ~ 6호서식 각 1부. 끝.